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7.11.(수)

책 임 자		담 당 자	
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(02-2100-1730)		김 지 용 사무관 (02-2100-1725)
	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강 석 민(02-2100-1750)		정 진 구 사무관 (02-2100-1751)

제목 : 「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」 시행 및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

◇ **금융정보분석원**(이하, FIU)**은 금융위원회 의결**(7.11일)**을 거쳐 "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**(이하, FIU 검사·제재규정)"을 **시행**

○ 동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**11개 검사수탁기관***의 **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**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, **제재절차**의 **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**

* 금감원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중앙회, 행안부, 과기부, 중기부, 관세청 등

◇ FIU는 FIU 검사·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'18.7.11일 **「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*」를 개최**

*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관련 검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담당 임원으로 구성

○ FIU 검사·제재 규정의 **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**하고, 향후 **감독 강화 방안**을 논의

Ⅰ.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

1. 추진배경

□ **특정금융거래보고법**은 금융회사에 **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**하고 있으며, FIU의 **검사 및 일부 제재*** **업무**를 **업권에 따라 금감원,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**

*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·기관주의 제재,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·감봉·견책·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을 위탁(금융회사에 대한 시정명령,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, 직무정지는 비위탁)

○ **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**은 FIU 원장이 검사절차, 조치 등에 관한 **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**(제15조제4항)

□ FIU 검사·제재 규정은 「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*의 **주요 내용을 반영**하여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**검사절차 및 제재에 적용**되는 **공통 기준을 마련**하고, 제재절차의 **투명성 제고를** 위해 제정

*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금융위원회 고시

2. 주요내용

가. 검사운영 절차 (제5조 내지 제13조)

□ 검사실시 **사전통지**(7일전), **검사원의 권한*** **및 의무**, 금융회사에 대한 **검사 결과 통보** 등 검사수탁기관의 **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**를 규정

*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·진술 요구, 금융거래기록 등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등

나. 제재기준 (제14조 내지 제22조)

□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**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**하고, **제재의 가중·감면 사유**를 규정

다. 제재절차 개선 (제23조 내지 제28조)

□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**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**하고, **의견진술 기회를 부여**

□ FIU 원장은 과태료, 시정명령 등 비위탁 제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자문기구로서 **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**함

○ 심의위원회는 **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**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(개의를 위해서는 **민간위원의 경우 2인 이상 출석이 필요**)

라. 검사역량 강화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 (제29조 등)

□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**교육 의무화** (연 1회이상)

□ **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**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**감독정책 등에 반영**하기 위하여 **「검사수탁기관 협의회」를 정례화** (연 2회)

Ⅱ.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

1. 협의회 개요

□ '18.7.11일 (수) FIU는 **「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」를 개최**

<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>

■ (일시/장소) **'18.7.11일(수)** 16:00~17:30 / 금융위원회

■ (주요 참석자) **금융정보분석원** 및 금감원 등 **검사수탁기관**

2. 주요 논의내용

가.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를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하여 정비

□ FIU는 검사·제재규정 시행, 국제규범의 강화 및 FATF 상호평가 수검('19년 시작)에 대비하여 **감독체계 운영을 강화**해나갈 계획

○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**"평가-검사-교육(개선)"이 연계·순환되는 체계로 개편**

○ FIU와 수탁기관 간 **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긴밀히 협조**

○ FIU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**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 등 감독권 적극 수행**

나.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·검사·교육 운영 개선

□ **(평가)** 종합이행평가(FIU 실시, 연1회) 외에 금융회사의 **자가 위험평가**(주기적 시행)를 통해 **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·체계화 추진**

○ 금융회사로부터 **의견수렴**을 통해 **자가위험평가 관련 평가 지표 조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**(~'18.4분기)

< 이행평가제도 >

• **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*** **(연 1회)**

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충실도 및 검사 결과, 자가위험평가 등을 반영하여 **종합적으로 평가**(FIU내부평가)

* 관련근거 : 업무규정 제18조(종합평가)

• **자가위험평가*** **(주기적시행)**

위험기반접근법에 **기반**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**금융회사가 자체적**으로 **점검·평가**하여 **RBA 시스템 등**을 통해 FIU에 **보고**(금융회사 등)

* 관련근거 : 업무규정 제19조(자가평가),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(내부통제기준 등)

□ **(검사)** FIU는 수탁기관에 **FIU의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**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

○ 수탁기관은 FIU의 **감독검사업무 운영계획 등 감독정책에 따라 검사를 수행**하고, 특히 소관 업권에 대한 **위험평가 결과 확인된** 자금세탁 관련 **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**

○ 또한, FIU 검사·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향후 검사 시 적발된 **주요 위규사항***에 대해서는 보다 **엄정한 제재 및 조치 적용**

* 고객확인 미이행, 의심거래보고 소홀 및 고액현금거래 미보고(보고기한 미준수 포함) 등

□ **(교육)** 평가 및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**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효과를 제고**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

○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**5개 핵심분야*** **중심**으로 개편하고, 업권별·직무별 특화 교육 강화

* ①FIU 감독정책방향, ②STR 보고 충실도 제고, ③독립적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, ④국제동향 및 대응방안, ⑤제도별 실무운영사례

○ **유관기관 협의체**(FIU·금융회사·교육전문기관 등) **운영**을 통한 금융회사 교육수요 분석, 콘텐츠 개발 및 교수요원 확충 등으로 **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향상 지원**('18.3분기~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